

인천지방법원 2021. 1. 8 선고 2019가합5036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2. 5. 27 선고 2021나10638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21. 1. 8 선고 2019가합50365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성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차정환

피 고 주식회사 B(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)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건 담당변호사 김경희

변론종결 2020. 11. 27.

판결선고 2021. 1. 8.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인천 부평구 D 공장용지 20,969.3㎡, E 공장용지 20,969.2㎡ 중 각 12,699/25,398 지분에 관하여, 피고와 주식회사 F 사이에 2014. 10. 7. 체결된 합의서 중 제4항의 인천지방법원 2010. 3. 26. 접수 제174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2010. 3. 26. 접수 제174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약정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6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주식회사 F(이하 'F'라 한다)는 2009. 10. 21. 인천 부평구 D 공장용지 41,938.5㎡(2016. 1. 26.경 인천 부평구 D 공장용지 20,969.3㎡와 E 공장용지 20,969.2㎡로 분할됨, 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중 12,699/25,398 지분(이하 'F 지분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03. 11. 26.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이 사건 토지 중 F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,699/25,398 지분(이하 'G 지분'이라 한다)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H가 2008. 4. 16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. 12. 18. G 주식회사(이하 'G'이라 한다)를 분할 설립한 다음 2008. 12. 29. G 앞으로 이전해 주었다.

나. 피고는 2010. 3. 25. F 및 G와 사이에, 피고가 F에게는 80억 원의 범위 내에서, G에게는 133억 원의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대출 방식으로 F 지분 및 G 지분에 설정된 제한적 권리나 분쟁관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이자율 연 10%, 연체이자율 연 25%로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대출약정'이라 한다). 아울러 이 사건 대출약정의 담보로 ① F 지분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2010. 3. 26. 접수 제17466호로 근저당권자 피고, 채무자 F,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, ② G 지분에 관하여는 위 법원 2010. 3. 26. 접수 제17467호로 근저당권자 피고, 채무자 G,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.

다. F 및 G은 위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0. 3. 26. 주식회사 I(변경 후 상호 J 주식회사, 이하 'I'이라 한다)과 사이에,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부동산신탁약정(이하 '이 사건 신탁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F 지분 및 G 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2010. 3. 26. 접수 제17468호로 I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.

라. F는 I과 피고를 상대로 F 지분에 관하여 I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(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3820)를 제기하여 2013. 12. 13.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신탁약정 등이 무권대표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고, 다만 F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F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무와 피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I은 F 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피고는 F로부터 9,492,603,324원 및 그중 8,123,799,96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F에게 F 지분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, 그 항소심(서울고등법원 2014나5878) 법원은 2014. 8. 29. 피고에 대한 부분을 피고는 F로부터 9,492,603,324원 및 그중 8,123,799,96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F에게 F 지분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F는 피고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9,492,603,324원 및 그중 8,123,799,96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변경하는 판결(이하 '이 사건 판결'이라 한다)을 선고하여 이후 확정되었다.

마. 피고와 F는 2014. 10. 7.경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이 사건 판결에 따른 F의 피고에 대한 채무(이하 '이 사건 판결금 채무'라 한다)의 이행 등에 관한 합의(이하 '이 사건 합의'라 한다)를 하였다.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2. F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되, 동 합의 체결 후 F 지분이 분할등기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.

3. F는 이 사건 판결문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F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, 채권최고액 13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

여 주기로 한다.

4. 위 제3항의 근저당권 설정을 갈음하여, F 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바. F의 대표이사 K과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설철거 및 현장관리 위임을 받은 L회사 대표 M은 2013. 7. 3.경 철거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을 철거하면서 사무실 안에 있던 방송장비 등을 부수게 하였다는 재물손괴죄 등의 범죄사실로 2016. 2. 11.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6060호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.

사. 원고는 F, K, M을 상대로 위 범죄사실 등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(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8726호)를 제기하였고, 위 사건에서 원고와 F 사이에 2018. 7. 5. F가 원고에게 6억 원을 2018. 8. 31.부터 2023. 7. 31.까지 월 1천만 원씩 60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(이하 '이 사건 조정'이라 한다).

[인정 근거] 갑 제1, 2, 12, 21호증, 을 제4호증, 제8호증의 1, 22, 제1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원고가 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합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합의를 첨부서류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(을 제8호증의 17)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, 원고는 적어도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2017. 12. 27.경에는 이 사건 합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,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'취소원인을 안 날'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,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,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

필요로 한다(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).

을 제8호증의 16, 17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7. 12. 27.경 F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F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원고가 F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에 따라 6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고,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13. 7. 3.경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이므로 원고의 F에 대한 위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F가 원고 등을 상대로 차임 청구의 소(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2306)를 제기하여 2013. 9. 5. 433,5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F는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있고,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이 합계 714,596,713원에 달하여 원고의 F에 대한 위 채권액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F에 대한 위 채권은 실질적으로 부존재하는 것이라 하겠고, 위 각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어 원고가 상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 효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F가 원고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액이 원고의 F에 대한 위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F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, 원고(또는 F)가 위 각 채권을 상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원고가 F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원고의 F에 대한 위 채권이 상계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F에 대한 위 채권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(F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F의 적극재산에 산입한다).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

1) 이 사건 합의 당시 F의 적극재산

가) 이 사건 토지 중 F 지분의 가액

F 지분이 이 사건 토지 중 12,699/25,398인 사실,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F 지분이 F의 소유로 회복되어야 하는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, 갑 제1호증, 제13호증의 1 내지 4,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2014. 10. 7.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59,468,000,000원인 사실, 이 사건 토지 위에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었고 그 폐기물 처리 비용 중 F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1,219,000,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, 이 사건 합의 당시 F 소유로 회복되어야 할 F 지분의 가액은 28,515,000,000원[= (59,468,000,000원 × 12,699/25,398) - 1,219,000,000원]이다.

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지분을 고려한 후 F 지분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무, 위 건물 철거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 전액 등을 공제하면 F 지분의 가액은 2,936,000,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.

갑 제3,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토지에 G 지분 중

3,308.1/20,969.2에 관하여 주식회사 N(이하 'N'이라 한다)을 채권자, 피보전권리를 매매에 의한 소유권(혹은 공유지분)이전등기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(이하 'N 가처분'이라 한다), I 지분 11,698/12,699 중 5,005/25,398에 관하여 O 주식회사(이하 'O'이라 한다)를 채권자,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(이하 'O 가처분'이라 한다), I 지분 11,698/12,699 중 7,694/23,396에 관하여 G을 채권자,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에 기한 신탁등기말소청구권 및 신탁약정 및 신탁법에 기한 지분권반환청구권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(이하 'G 가처분'이라 한다)가 각 마쳐져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17호증,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N 가처분의 채무자는 G인 점, O 가처분은 O과 G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

하는 점, G 가처분은 I과 G 사이의 G 지분에 관한 신탁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점 등에 의하면 F를 위 각 가처분의 원인관계의 채무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가처분을 F 지분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.

또한 피고의 근저당권은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,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F의 소극재산에 산입하는 이상 피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F 지분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, 위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가압류 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액과 위 건물의 철거 비용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F 지분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, 이 사건 토지의 폐기물 처리비용 중 F 지분 비율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이 사건 토지 중 F 지분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.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피고는, 폐기물 처리 비용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한 N의 재산으로 보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비용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폐기물 처리 비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, 폐기물을 처리한 이후에 그 처리 비용에 관하여 N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어렵다.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) F의 원고 등에 대한 채권

을 제11, 12호증, 제13호증의 1, 2,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. 9. 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2306호로 원고, P, Q, R은 연대하여 F에게 433,5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이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이 사건 합의 당시 F의 적극재산으로 원고 등에 대한 채권 433,500,000원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.

따라서 이 사건 합의 당시 F의 적극재산은 합계 28,948,500,000원(= 이 사건 토지 중 F 지분 가액 28,515,000,000원 + F의 원고 등에 대한 채권 433,500,000원)이 된다.

2) 이 사건 합의 당시 F의 소극재산

위 인정 사실 및 갑 제9, 24, 25, 26, 28, 30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F의 소극재산으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 9,492,603,324원, 원고에 대한 채무(이 사건 피보전채권) 600,000,000원, 서대문세무서에 대한 채무 189,844,080원, S에 대한 채무 962,800,000원, T에 대한 채무 2,300,000,000원(=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머36649 조정에 따른 채무 1,300,000,000원 +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227 판결에 따른 채무 1,000,000,000원), 대한민국에 대한 채무 1,000,000,000원, O에 대한 채무 3,448,767,123원¹⁾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, 이 사건 합의 당시 F의 소극재산은 합계 17,994,014,527원이다.

3) 채무초과 여부

이 사건 합의 당시 F의 적극재산이 합계 28,948,500,000원이고 소극재산이 합계 17,994,014,527원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²⁾, 이 사건 합의 당시 F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합의 당시 F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염원섭, 판사 구세희, 판사 유동균

1) 3,000,000,000원 + 3,000,000,000원에 대한 2011. 10. 11.부터 2014. 10. 7.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

2) F의 O에 대한 채무를 F의 소극재산에 산입하지 않고 O 지분 가액을 F의 적극재산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도 F의 적극재산은 24,260,866,187원[= 28,948,500,000원 - O 지분 가액 4,687,633,813원(59,468,793,000원 × O 지분 2,002/25398)], 소극재산은 14,545,247,404원이 되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.

